



## WIPO 모델特許法公表 —3그룹 意見差로 遲延—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開發途上國을 相對로 한 「發明과 開發을 위한 모델法」을 새로 作成하여 開途國들이 國際化趨勢에 따른 新法制定에 活用하도록 慮慮하려하고 있으나 加盟國들의 事情때문에 모델法의 公開가 遲延되고 있다.

공개지연의 主要理由는 先進經濟市場圈, 共產圈, 開發途上國들이 3個그룹으로 나뉘어 利害가 相反되기 때문에 1980年頃에 改正할 파리協約會議를 앞두고 서로 索制하느라고 磋躇하는 것이다.

現在까지도 WIPO는 모델法 줄거리 를 作成하여 立法過程에서의 授用을 종용해 왔으나 工業所有權制度를 예워 산 國際情勢는 技術移轉에 대한 南北對立, PCT와 EPC의 發効, 共產圈諸國의 파리同盟加入 등 複雜하게 展開되고 있어 모델法의 方向도 이러한 國제정세와 대치되게끔 强要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法인 「발명과 개발을 위한 모델法」를起草하게 되었으나 對立 3個그룹 가운데서 선진경제시장권이 同法案이 理想에 치우치므로 現實에 不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保留하고 있다.

더우기 이 법안이 파리협약개정회의 전에 公表되면 이 自體가 既定으로서 定着되어 선진국들이 不利한 立場에 處할 것을 겉내고 있는 것이다.

법안의 要旨는 개발도상국의 經濟自立에 力點을 두고 特許發明의 實施에는 개발도상국의 主張을 많이 받아 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파리協約에는 出願부터 4年, 또는 特許日부터 3년동안 어느 것이나 滿了하지 않으면 強制實施權의 設定은 認定하지 않으며 또한 強制實施權設定日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特許權을 取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같은 規定을 개발도상국쪽에서 보면 自國에서 아무런 生產活動도 하지 않고 自國民의 製造를 監視하는 役割을 할뿐이므로 이 條項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그룹은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그들의 資本進出과 技術輸出이 어려워진다는 주장하다. 다시 말해서 進出先國의 技術, 生產力이 낮을 경우 高度한 技術力이 要求되는 部品등은 本國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조하여 輸入하는 것이 常例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특히 발명의 不實施라 하여 특허권을 收用한다는 것은 生산활동을 事實上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내거는 것이다.

또한 개개 개발도상국에게 特許權收用權限을 인정하면 그 나라의 形便에 따라 取消될 경우도 發生할 念慮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第3者가 自由로이 實시하게 되어 다른 선진국의 競爭企業進出이 容易하게 되어 일찍부터 그 나라의 市場性에 着眼을 해놓고 生產段階에서 뒤따라질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共產圈諸國의 對開發途上國援助는 이제까지 軍裝備, 鐵道, 製鐵플랜트 등을 一括供給하는 形態에서 工業所有權問題는 없었으나 요즘 들어서의 요구는 自國民雇傭의 機會를 確保하고 民生安定에 寄與하는 원조가 될 生產工場建設과 기술공여를 바라는 등 공산권제국의 援助形態에도 變化가 일고 있다. 또한 被援助國이 될 그들이 西方先進國의 特허권에 의한 制約도 바라지 않게 되어 역시 新法案이 탑탁치가 않은 눈치이다.

따라서 선진국 그룹은 모델法의 공포를 1980년의 파리협약개정 이후까지 延期를 바라고 있으나 WIPO에서 이 문제의 공포문제를 投票에 부치면 개발도상국의 數字가 壓到的 多數이므로 모델法을 中心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意向이 採擇될 것은 明若觀火할 것으로 判斷, WIPO常設工業所有權開發協力委員會에서 繼續 檢討

(國) (際) (動) (向)



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 제의에 공산권체국에서도 선진국그룹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종래의 개발도상국 입장을 지지하던 태  
도를 바꾸었다. 이들의 이같은 태도변경은 종래부터의  
그들 주장인 發明者證制度의 採用問題가 선진국그룹과  
개발도상국간에 對立狀態가 계속되면 그칠수록 遲延될  
것으로 判斷한 까닭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지난 9月 下旬에 열린 WIPO  
調整委員會에서는 모델법을 6개파트로 나누어 파트 1  
에는 특허제도에 관한 것만을 다루기로 했는데 그 結  
果를來年中에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共產圈諸國에서 주장하는 發明者證制度 등을 규  
정한 파트 2 以下는 常設委員會에서 계속 심의키로 하  
였으나 이 역시 파트 1에 이어 공표될 것이다.

### 헝가리, 微生物寄託條約批准

헝가리政府는 지난 7月 11日 微生物寄託承認에 관  
한 부다페스트條約批准書를 寄託하였다.

同條約의 發効日字는 批准國이나 加盟國이 定足數에  
이르면 公告될 것이다. (WIPO提供)

### 핀란드, 商品·서비스分類協定批准

핀란드政府는 지난 7月 12日 商標登録目的을 위한  
國際商品 및 서비스分類에 관한 니이스協定中 77年  
제네바協定批准書를 寄託하였다.

同協定의 發効日字는 批准國이나 加盟國이 定足數가  
되면 公告될 것이다. (니이스告示 第38號, 1978年 7月  
14日)

(WIPO提供)

### 불가리아, 微生物寄託條約批准

불가리아政府는 지난 7月 15日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國際微生物寄託承認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批准書  
를 寄託하였다.

同條約의 發効日字는 批准國 또는 加盟國이 定足數에  
이르면 公告될 것이다. (부다페스트告示 第3號, 197  
8年 7月 24日).

(WIPO提供)

### 南阿聯邦 特許法改正

—79年 1月 1日부터 施行—

South Africa 카나타크邦은 新特許法을 制定하여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新法은 現行法에 比해서 新規性要  
件, 審查基準, 審查制度, 権利存續期間등 많은 部分을  
改正하였다. 새 법의 要點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出願節次

##### (1) 明細書의 用語

파리協約加盟國의 公用語로 出願이 可能하나 南阿聯  
邦의 공용어인 英, 아프리카語, 네덜란드語 以外의 용  
어일 때는 出願日부터 3個月 以內에 南阿의 공용어에  
의해 認證된 翻譯文을 提出해야 한다.

##### (2) 假明細書에 의한 出願

출원은 假明細書 즉 發明의 要點만을 記載한 명세서  
나 完全明細中 어느 것이던 간에 우선 無妨하다. 그러나  
가명세서로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1年 以內에 완전  
명세서를 提示하고 그 優先日을 主張해야 출원이 失効  
되지 않는다.

##### (3) 優先權主張 경우의 特例

파리협약에 의거한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는 第1

(國)

(際)

(動)

(向)



國出願의 出願番號, 出願日 및 발명의 名稱을 表示하여 우선 출원한 다음 명세서, 圖面등은 그로부터 14日以內에 제시해야 출원일이 確定된다.

## 2. 特許要件

다음에 摘記하는 不特許事由를 除外하고는 新規하고 進歩性이 認定되어 商業, 工業, 農業에 利用되는 발명은 特許性이 있다.

이 속에는 사람이나 動物의 몸에 대한 外科手術, 治療 혹은 診斷에 의한 處置方法에 使用하기 위한 物質 혹은 組成物이 包含된다. 이 경우, 물질 혹은 조성물이 出願前에 公知되고 그 물질 혹은 조성물의 그같은 方法에 의한 사용이 그 時點에서 공지가 아닐 때는 特許性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대하여 의과수술, 치료 혹은 진단을 實施함에 따른 사람 혹은 동물의 처치 방법의 발명은 상업, 공업 혹은 農業에 이용 또는 適用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 (1) 不特許事由

- (a) 發 見
- (b) 科學上의 理論
- (c) 數學的 方法
- (d) 文學, 戲曲, 音樂 혹은 藝術上의 作品, 其他의 美術的 制作
- (e) 精神的行爲, 遊戲 혹은 事務를 위한 計劃, 規則과 方法
- (f) 컴퓨터 · 프로그램
- (g) 情報의 準備에 관한 발명은 特許를 받을 수가 없다.

더우기 公序良俗에 反한 발명이나 동물 혹은 植物의 品種에 관한 발명도 不特許된다. 다만 식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植物育種法에 의해 保護를 받고 있다.

또 原子力法은 南阿聯邦原子局 以外의 者에 대하여는 一定한 原子核關係의 발명에 대해 特허의 取得을 禁하고 있다.

### (2) 新規性의 要件

(a) 新規性判斷의 基準은 南阿聯邦出願 혹은 파리 협약에 의거한 우선권 주장일 전에 國內 혹은 世界의 어디서나 文書, 口頭, 사용 또는 그의의 方法에 의해 公衆에게入手可能하게 된 모든 것 즉 製品, 方法, 情報가 對象이 된다.

(b) 公衆의 閲覽을 위하여 公開된 출원에 포함한 對象物은 그 출원과 공개의 양쪽에 포함되거나 그 대상물의 우선권 주장일이 當該請求範圍의 그 것보다 빠를 때는 그 출원은 당해 청구권 범위의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되었다 해도 先行技術要件를 構成한다.

이 경우 신규성만으로는 進歩性判斷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c) 南阿聯邦內에서 商業的 規模에 의한 秘密의 實施도 公知技術로 보게 된다. 다만 신규성만으로 진보성판단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舊法에서의 新規性要件은 南阿內에서의 公知, 公用만이 考慮되었으나 新法에서는 이른바 世界公知制度가 採用되었다.

### (3) 自明性

이른바 진보성이 要求되어 出願前에 그 발명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의 熟達者에게 自明한 것일 경우에는 特許許與의 대상에서 除外된다.

## 3. 審查節次

### (1) 審 查

審查는 方式審查만을 하되 신규성이나 特許性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 (2) 許可와 公告



完全明細書는 출원으로부터 18個月 以内에 許可되며 이어 그事實이 特許公報에 公示된다. 다만 料金을 納入한 다음 3개월을 延期할 수가 있다.

허가의 공시후 모든 出願書類는 特許廳에서 公衆의 閲覽을 위하여 公開된다.

### (3) 特許權의 許與

特許許可의 公시후에 特許權이 허여되며 許與日字는 公示日이 된다.

### (4) 異議申請制度의 廢止

舊法에 있던 異議申請制度는 廢止되고 특허는 特허공보에 公시되면 自動的으로 허여된다.

權利侵害에 대한 權利行使는 特허허여로부터 9개월 후에야 가능하다.

## 4. 權利存續期間

특허권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20年이다. 年金納入에는 6개월의 猶豫期間이 있으며 所定期間內에 연금납입을 하지 않으면 失効되나 失權된 權利에는 回復을 請求할 수가 있다. 그러나 存續期間延長制度는 欲다.

## 5. 取消請求

권리의 존속기간중에 언제라도 누구나 特許取消請求를 할 수가 있다. 取消理由는 신규성, 진보성의 缺如, 實施不能, 明細書不備 등으로 가능하다.

## 6. 強制實施

特許發明이 잇달아 출원으로부터 4년, 권리허여로부터 3년가운데 어느쪽이나 늦은 것의 期間滿了前에 國內에서 商業的 規模 혹은 適當한 정도로 실시되지 않고 또는 그 不實施에 대하여 正當한 이유가 없을 때는 利害關係人은 그 特허권에 대해서 強制實施權의 許諾을 요구할 수가 있다.

## 7. 侵害에 대한 權利行使

침해에 대한 權利行使는 特허허여 일로부터 9個月經過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特許局長이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特허허여후 언제든지 權利行使을 허가 할 수가 있다.

## 8. 經過措處規定

(1) 舊法에 의한 출원으로 허여되는 特허는 그 허여가 新法施行日 前後를 不問하고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新法이 適用된다.

(a) 取消原因은 舊法의 规定에 의거한다.

(b) 침해에 대한 權利行使사는 特허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c) 존속기간은 舊法規定에 따른다.

(3) 舊法에 의한 출원 및 구법에 의해開始된 절차는 구법에 따라 取扱한다.

## 超LSI特許 IBM에 公開

—日本共同研究 5個社서 合意—

日本通產省과 超LSI技術研究組合員들인 富士通, 日立製作所, 日本電氣, 三菱電機 및 東芝등 5個社는 美IBM에 대하여 그들이 開發한 超LSI基本技術特許를 公開하자는 基本的인 合意를 보았다. 이 特허는 日本通產省의 研究補助金으로 富士通등 5個社가 共同開發中인 것이며 IBM의 要求에 따라 公개하게 되는 것인데 特許公開의範圍, 特許料, 契約期間 등의 契約條件은 1979年까지 延期될 것이다.

현재 前記 5個社는 超LSI技術에 관한 特허에 대하여 自國內에 300餘件를 출원중이며 이번 特허계약이 成立되면 이미 IBM이 日本 16個社에 提供하고 있는 IHS 등의 기본특허계약에 影響이 미칠것으로 豫測된다.